

문서번호	기획조정실-7470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5.12.21.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이사장 방침 제 227호

★과장	팀장	기획조정실장	경영지원본부장	이사장
협 조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안

- 제499회 이사회 부의안 -

2015.

부 의 안

제 회 이 사 회			
일 자	2015. 12.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정관중개정정관(안) 제 호		
구 분	의 결 사 항		

○ 제 안 자 : 기획조정실장

○ 주 문 : 정관중개정정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 제안사유

- ‘공공자전거 사업’ 신규수탁 시의회 가결(교통위원회, ’15.12.3) 및 ‘서울시 공공자전거 위수탁 관련 통보’(보행자전거과-15890호, ’15.12.1)에 따라, 공공자전거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원 반영

○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음

○ 참고사항

1. 관련근거

- 서울형 공공자전거 민간위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1호, ’15.8.7)
- 공공자전거 사업 인수추진 및 운영방안(이사장방침 제201호, ’15.11.17)
- 서울시 공공자전거 위수탁 관련 통보(보행자전거과-15890호, ’15.12.1)
- 공공자전거 설치·운영 공단위탁 동의안 가결(시의회 교통위원회, ’15.12.3)

2. 절 차 : 이사회 의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인가 후 공포·시행

정 관 중 개 정 정 관 (안)

(제 안 요 지)

1. 제안이유

가. '공공자전거 사업' 신규수탁 시의회 가결(교통위원회, '15.12.3) 및 '서울시 공공자전거 위수탁 관련 통보'(보행자전거과15890호, '15.12.1)에 따라, 공공자전거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원 반영

2. 주요내용

가. 신규수탁 '공공자전거 사업' 운영인력 정원 반영 : 일반직 + 12명

○ 1급 + 1명 (처장) / 2급 + 2명 (운영팀장, 관리팀장)

3급 이하 + 9명 (운영, 전산, 홍보, 수입금, 시설, 자전거 배송·정비 등)

《 공공자전거 사업 개요 》

자전거 운영 및 대여소 구축

(수량 : 누계)

구분	2015. 10월	2016. 7월	2017년
자 전 거(대)	2,000	5,000	10,000
대여소(개소)	160	420	800

대여시간 : 365일 24시간

이용요금

1일권	회원권			
	1주	1개월	6개월	1년
1,000원	3,000원	5,000원	15,000원	30,000원

1시간 초과시 30분당 1,000원 추가요금 / 1년 회원권 환승마일리지 부여

조직 및 인력 : 1처 2팀 / 총 73명 (일반직12, 공무원19, 기간제42)

사업인수 일정 : ('15.9월~) 市직영 → ('16.3월~) 공단 위탁운영

나. 부칙신설 : 제1조(시행일) 공포일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서울형 공공자전거 민간위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1호, '15.8.7)
- 공공자전거 사업 인수추진 및 운영방안(이사장방침 제201호, '15.11.17)
- 서울시 공공자전거 위수탁 관련 통보(보행자전거과-15890호, '15.12.1)
- 공공자전거 설치·운영 공단위탁 동의안 가결(시의회 교통위원회, '15.12.3)

나. 절 차 : 이사회 의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인가 후 공포·시행

정관중개정정관(안)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조직 및 정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를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로 한다.

“부칙” 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공단의 ---,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정한다.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공단의 ---, 정원은 “별표2”와 같으며,----정한다.	조문변동 없이 “별표2”만 변경 (별지 참조)
부칙 (신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현행) ← '15.10.26 이사회 의결 및 '15.12.17 시의회 교통위원회 보고에 따른
 정원증원 관련 정관개정안 市인가(예정) 사항 반영

정 원 표

【 총 정원 : 2,170명】

임원 및 일반직, 서비스직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일 반 직				서비스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2,170	5	1,703	22	41	1,640	462

※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

〈별표 2〉 (개정)

정 원 표

【 총 정원 : 2,182명】

임원 및 일반직, 서비스직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일 반 직				서비스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2,182	5	1,715	23	43	1,649	462

※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

부 의 안

제 회 이 사 회			
일 자	2015. 12.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제 호		
구 분	의 결 사 항		

○ 제 안 자 : 기획조정실장

○ 주 문 :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 제안사유

- ‘공공자전거 사업’ 신규수탁 관련 정관상 정원증원 사항 반영 및 이에 따른 기구개편 및 분장업무 등의 조정

○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음

○ 참고사항

1. 관련근거

- 서울형 공공자전거 민간위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1호, '15.8.7)
- 공공자전거 사업 인수추진 및 운영방안(0시장방침 제201호, '15.11.17)
- 서울시 공공자전거 위수탁 관련 통보(보행자전거과-15890호, '15.12.1)
- 공공자전거 설치·운영 공단위탁 동의안 가결(시의회 교통위원회, '15.12.3)

2.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공포·시행

※ 다만,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이 인가한 정관의 규정에 부합되게 공포·시행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제안요지)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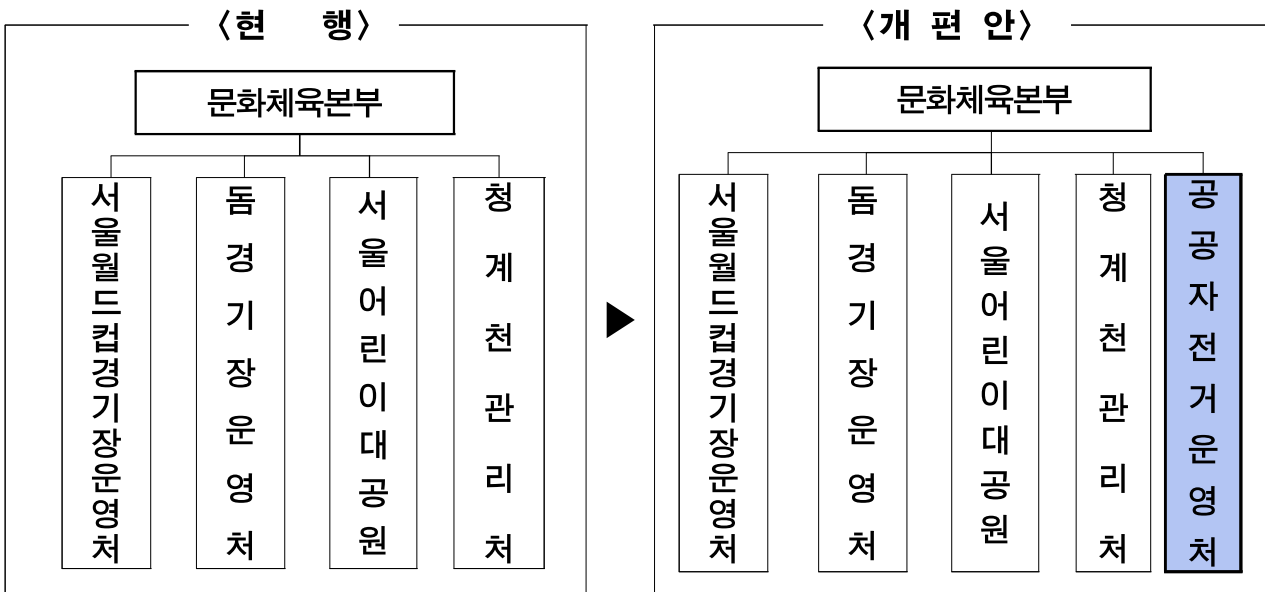
가. '공공자전거 사업' 신규수탁 관련 정관상 정원증원 사항 반영 및 이에 따른 기구개편 및 분장업무 등의 조정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본부 산하 "처"단위 기구 개편

- 공공자전거 사업 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자전거운영처' 신설

그간 원활한 인수 준비 및 사업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임시전담기구로 운영하던 「공공자전거인수단(TF)」을 정규조직으로 편제·운영



나. 신규수탁 '공공자전거 사업' 운영인력 정원 반영 : 일반직 + 12명

* 정관상 정원반영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사항

- 1급 + 1명 (처장) / 2급 + 2명 (운영팀장, 관리팀장)

3급 이하 + 9명 (운영, 전산, 홍보, 수입금, 시설, 자전거 배송·정비 등)

다. 신설 기구 '공공자전거운영처' 업무분장

- 공공자전거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공공자전거 수입금 관리 및 정산 업무
- 공공자전거 홍보, 문화행사 기획 및 민간협업에 관한 사항
- 자전거콜센터 운영 관리 업무
- 자전거대여소 구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
- 공공자전거 수리, 정비, 배송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라. 부칙신설 : 시행일(공포일부터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서울형 공공자전거 민간위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01호, '15.8.7)
- 공공자전거 사업 인수추진 및 운영방안(이사장방침 제201호 '15.11.17)
- 서울시 공공자전거 위수탁 관련 통보(보행자전거과-15890호, '15.12.1)
- 공공자전거 설치·운영 공단위탁 동의안 가결(시의회 교통위원회, '15.12.3)

나.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공포·시행

※ 다만,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이 인가한 정관의 규정에 부합되게 공포·시행

직제규정중개정규정(안)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이사 등)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체육본부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돔경기장운영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관리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업무를 관장한다.

제12조(기구) 제1항의 “별표1”를 조문변동 없이 별지의 “별표1”로 한다.

제14조(정원) 제1항의 “별표2”를 조문변동 없이 별지의 “별표2”로 한다.

제15조(직무분장)의 “별표3”을 조문변동 없이 별지의 “별표3”으로 한다.

“부칙” 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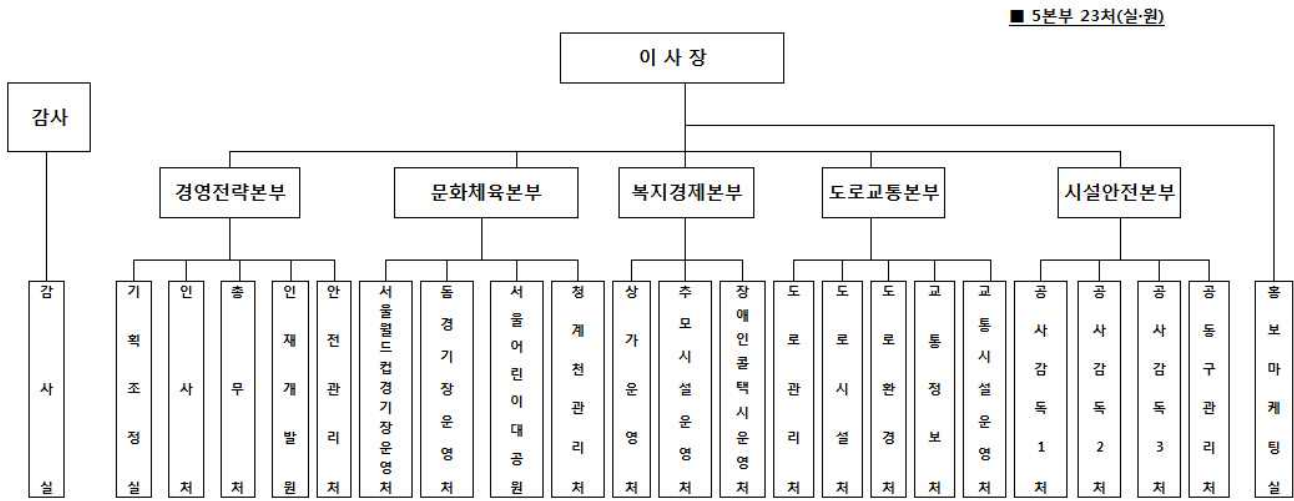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6조(이사 등) (생략)</p> <p>1. 문화체육본부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돛경기장운영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관리처 업무를 관장한다.</p> <p>2~5. (생략)</p>	<p>제6조(이사 등) (현행과 같음)</p> <p>1. 문화체육본부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돛경기장운영처, 서울어린이대공원, 청계천관리처, 공공자전거운영처 업무를 관장한다.</p> <p>2~5. (현행과 같음)</p>	<p>공공자전거 운영처 추가</p>
<p>제12조(기구) ①공단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p>	<p>제12조(기구) ①공단의 기구는 “별표1”과 같다</p>	<p>조문변동 없이 “별표1”만 변경 (별지 참조)</p>
<p>제14조(정원) ①공단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p>	<p>제14조(정원) ①공단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p>	<p>조문변동 없이 “별표2”만 변경 (별지 참조)</p>
<p>제15조(직무분장) ①제12조의 기구별 업무분장은 “별표3”과 같다</p>	<p>제15조(직무분장) ①제12조의 기구별 업무분장은 “별표3”과 같다</p>	<p>조문변동 없이 “별표3”만 변경 (별지 참조)</p>
<p>부 칙 (신 설)</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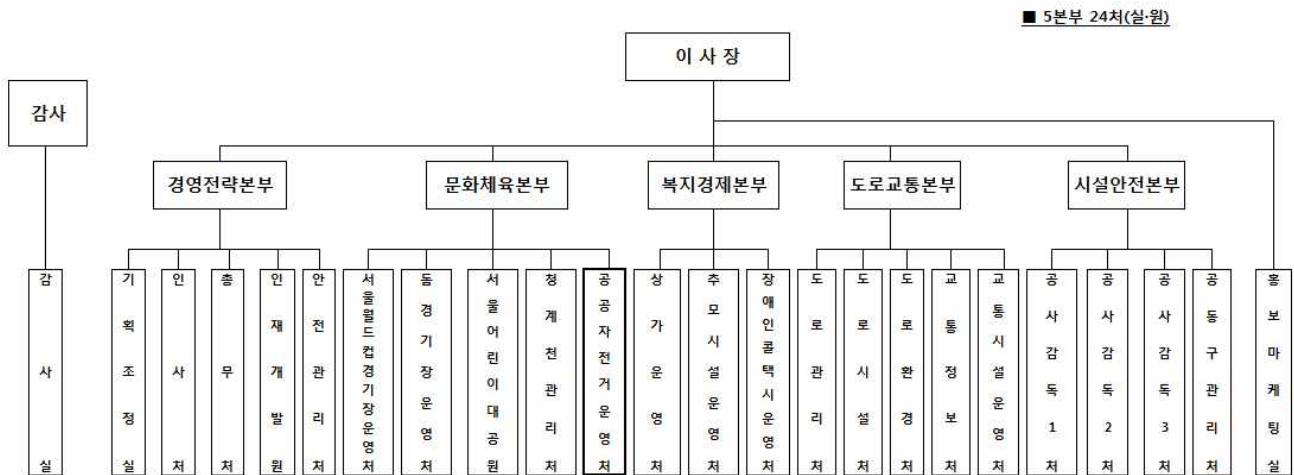
〈별표 1〉 (현행) ← '15.12.10 이사회 의결 및 '15.12.17 시의회 교통위원회 보고에 따른
 본부직제 개편 관련 정관개정안 市인가(예정) 사항 반영

기 구 표



〈별표 1〉 (개정)

기 구 표



〈별표 2〉 (현행) ← '15.10.26 이사회 의결 및 '15.12.17 시의회 교통위원회 보고에 따른
 정원증원 관련 정관개정안 市인가(예정) 사항 반영

정 원 표

【 총 정원 : 2,170명】

임원 및 일반직, 서비스직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일 반 직				서비스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2,170	5	1,703	22	41	1,640	462

※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

〈별표 2〉 (개정)

정 원 표

【 총 정원 : 2,182명】

임원 및 일반직, 서비스직

(단위 : 명)

구분	계	임원	일 반 직				서비스직
			소계	1급	2급	3급 이하	
정 원	2,182	5	1,715	23	43	1,649	462

※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하에 적의배분 시행

〈별표3〉 (신설)

부서별	업 무 분 장 내 용
공공자전거 운영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자전거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공자전거 수입금 관리 및 정산 업무 4. 공공자전거 홍보, 문화행사 기획 및 민간협업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콜센터 운영 관리 업무 6. 자전거대여소 구축 및 시설물 유지관리 7. 공공자전거 수리, 정비, 배송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자전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